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25. 5. 28.>

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(변경인가)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60일

신청인	상 호(명칭)	하역업 등록일
	성 명(대표자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주 소	전화번호

인가신청 내 용	항만명: 시설명(한정하역에 한함):	인가 신청의 종류 [] 신규인가 [] 변경인가
	화물명:	운임 및 요금 []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[]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
변경사유		
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인가(변경인가)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(시·도지사) 귀하

첨부서류	1.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. 사업의 수입·지출 예산서 1부 3. 운임 및 요금의 신·구 대조표(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	수수료 없 음

작 성 방 법

1.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(물량기준)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.
2.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(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)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.
3.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통보
신청인		처 리 기 관 (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)		처 리 기 관 (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)		처 리 기 관 (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)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